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실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 및 추가 (안 제1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 주요사업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나. 위원회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 제2항)

다.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임무
(안 제3조 ~ 안 제5조)

라. 회의, 안건배부,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 제6조 ~ 안 제9조)

마.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부칙 안 제2조)

4. 검토결과

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충청북도에서는 위원회 과다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112개 위원회 중 3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음.

이 중 기능 및 업무의 중복·유사 위원회, 동일 법령에 두 개 이상 설치 규정이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 항목별 개정내용 검토결과

① 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 및 추가 (안 제1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 주요사업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 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및 추가에 관한 사항임.

② 위원회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 추가(안 제2조 제2항)

-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을 조례통합에 따라 기능에 추가한 사항임.

③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임무 (안 제3조~안 제5조)

④ 회의, 안건배부,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 제6조~안 제9조)

⑤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부칙 안 제2조)

-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임.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과도한 위원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

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에의 이견이 없음.

다만,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체제의 일관성, 명확한 용어의 표현이 요구되므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 안 제2조 제1항

○ 안 제2조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주체가 제시되지 않고, 제2항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2항에 있는 위원회를 제1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 제1항

-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정 검토안>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안 제2조 제2항

○ 안 제2조 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주체가 1항에 수정·제시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 제2항

-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정 검토안>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안 제3조 제3항

○ 안 제3조 제3항의 경우,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용어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 제3항

-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수정 검토안>

⇒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붙임 1. 자구 수정안 대비표

2.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구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p> <p>2.</p> <p>3.</p> <p>②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p> <p>2.</p> <p>3.</p> <p>4.</p> <p>5.</p>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u>지명</u> 또는 위촉하되, <u>지명</u>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p> <p>2.</p> <p>3.</p>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p> <p>2.</p> <p>3.</p> <p>4.</p> <p>5.</p>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u>임명</u> 또는 위촉하되, <u>임명</u>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